

제49차(2015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 조사표

조사대상 기간 : (Ⅰ. 일반실태) 및 (Ⅳ. 재무제표)는 2014. 1. 1 ~ 12. 31 (1년간 실적)
 (Ⅱ. 인력실태) 및 (Ⅲ. 사업전환실태)는 2014. 12. 31일 기준



승인(협의)번호
제 14201 호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	업체번호	산업분류	규모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경 영 조 직		① 법 인 ② 개 인	
대 표 자	(①남, ②여)	대 표 자 연 령		년 생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소 재 지	시/도	시/군/구	읍/면	로
주 업 종	설 립 년 도			년
기 업 유 형 (인 증 여 부)	① 기술혁신형기업 ② 벤처기업 ③ 경영혁신형기업 ④ 일반기업	C E O 출 신	① 대기업출신 ② 중소기업출신 ③ 연구소출신 ④ 교수출신 ⑤ 기타(즉시창업)	
기 업 성 장 단 계	① 진 입 기 ② 성 장 기 ③ 성 숙 기 ④ 쇠 퇴 기	협 동 조 합 및 관 련 단 체 가 입 여 부	① 가 입 ② 미 가 입	
가 업 승 계	① 가업승계완료기업 (현CEO세대 : <input type="checkbox"/> 2세대 <input type="checkbox"/> 3세대이상) ② 가업승계준비기업 ③ 해당 없음			

※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및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법정 지정통계입니다.
 ※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절대 보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제7조, 통계법 제17조에 의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과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사에 대한 응답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임원 또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의 Ⅰ.일반실태, Ⅱ.인력실태, Ⅲ.사업전환실태, Ⅳ.재무제표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실사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기업데이터(주) 이영준 팀장, 이메일 : survey2015@kedkorea.com 전 화 : 02-2017-1812, 팩 스 : 02-6204-1921~3
-----	---

1. 일반실태 (2014.1.1~12.31일 기준)

1. 사업장 (2014년말)

1) 사업장(현장사무소 제외) 수 및 면적 (1평=3.3058㎡로 환산하여 기재)

전체			=	국내			+	해외		
갯수		개		갯수		개		갯수		개
면적		㎡		면적		㎡		면적		㎡

2) 본사 사무실 보유형태

- ① 자가소유 ② 임차사용 [유상 무상] ③ 자가소유 및 임차사용 병행

2. 수주현황(2014년 1년간 실적)

1) 1년 동안 귀사가 수주한 건설공사의 주된 입찰 방식은? 1순위 : 2순위 :

- ① 일반경쟁 ② 제한경쟁 ③ 지명경쟁 ④ 수의계약

2) 수주내역

건설공사 수주총액(①+②+③+④=⑤+⑥=⑦+⑧)										천원
공종	① 토목 공사 수주액									천원
	② 건축 공사 수주액									천원
	③ 산업설비 공사 수주액									천원
	④ 조경 공사 수주액									천원
발주자	⑤ 민간 공사 수주액									천원
	⑥ 공공 공사 수주액									천원
국내/해외	⑦ 국내 공사 수주액									천원
	⑧ 해외 공사 수주액									천원

3. 건설투자 (2014년 1년간 실적)

1) 연간 건설자재 구매액 (원도급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① 국내 구매액										천원
② 해외 구매액										천원
합 계 (①+②)										천원

2) 연간 건설장비 구매(임대)액 (원도급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① 국내 구매(임대)액										천원
② 해외 구매(임대)액										천원
합 계 (①+②)										천원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여부는? ① 설치 ② 미설치

4) 건설기술(특허) 개발 주목적은? [연구개발비용이 있는 기업만 해당]

- ① 신기술 반영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② 신규 사업 개발 ③ 신기술·특허 사용료 수입
 ④ 정부 자금지원 혜택 ⑤ 기타()

4. 공사실적(2014년 1년간 실적)

1) 연간 건설공사 매출액

건설공사 매출총액(①+②+③+④=⑤+⑥=⑦+⑧)															천원
공중	① 토목 공사 매출액														천원
	② 건축 공사 매출액														천원
	③ 산업설비 공사 매출액														천원
	④ 조경 공사 매출액														천원
발주자	⑤ 민간 공사 매출액														천원
	⑥ 공공 공사 매출액														천원
내수/수출	⑦ 국내 공사 매출액														천원
	⑧ 해외 공사 매출액														천원

2) 공사대금의 평균 수취비율

현금 수취 비율 (A)				어음 수취 (B)				합 계 (A+B)							
순수 현금 수취		어음대체용 현금(현금성) 수취		어음 수취 (B)		합 계 (A+B)		순수 현금 수취		어음대체용 현금(현금성) 수취		합 계 (A+B)			
			%		%		%	1	0	0	%				%

※ 어음대체용 현금(현금성) 수취비율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을 합한 비율을 기재

3) 공사대금 수취시 현금과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

현금 수취기일	어음 평균 수취기일						
	어음 수취기일		어음 결제기일 (만기일)				
			일				일

※ 수취기일은 기성률에 따라 기성완료 후 기성금을 어음으로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의미

5.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시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 1년간 하도급 공사 매출액

2014년 1년간 하도급 공사 매출액(①+②)															천원
① 대기업 하도급 공사 매출액															천원
② 중소기업 하도급 공사 매출액															천원

2) 귀사가 원도급업자로부터 지원(협력) 받은 사항은?

- ① 기술지원
- ② 인력파견
- ③ 자금지원
- ④ 특허지원
- ⑤ 자재제공
- ⑥ 장비지원
- ⑦ 자본참여
- ⑧ 기타()
- ⑨ 해당없음

3) 귀사가 원도급업자와 하도급거래시 겪은 애로사항은?

- ①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 ② 어음지급 후 만기도래시 미결제
- ③ 구두지시 후 시공비용 불인정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⑤ 하도급대금의 일방적 감액
- ⑥ 공사대금(기성금) 지급 지연
- ⑦ 계약조건에 부당한 특약 설정
- ⑧ 기간연장/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 ⑨ 기타()

6. 해외진출

1) [2014년 해외공사 수주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응답] 수출 경로는?
 ① 직접개척 ② 정부지원 ③ 공공기관 동반진출 ④ 대기업 동반진출 ⑤ 중소기업 동반진출

1-1) 수출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보유여부는?
 ① 전담 부서·인력 모두 보유 ② 전담부서 없이 인력만 보유 ③ 미보유

1-2) 수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당사항 모두 V표)
 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② 무역금융 활용애로 ③ 인증 등 기술규제
 ④ 통관 등 절차관련 규제 ⑤ 수출 부대비용 부담 ⑥ 해외시장 정보부족
 ⑦ 수출 전문인력 부족 ⑧ 현지 마케팅 ⑨ 기타()

2) 향후 해외진출 계획여부 및 그 시기는?
 ① 있다 (1년 이내 2~3년 이내 3~5년 이내 5년 이후) ② 없다

3) 향후 3년 이내 신규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출유형별 해당지역은?(해당지역 모두 기재)

해외수출										
해외투자										

- ① 중국 ② 일본 ③ 아시아(중국,일본 제외) ④ 중동 ⑤ 러시아·CIS
- ⑥ 유럽(러시아, CIS 제외) ⑦ 북미 ⑧ 중남미 ⑨ 아프리카 ⑩ 오세아니아

*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 현지 법인 또는 지사설립, 현지 회사 인수 등 해외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

4)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해외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만 응답]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해당사항 모두 V표)
 ① 신용보증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 ② 전시회, 박람회 참여시 자금지원 ③ 수출전문인력 지원
 ④ FTA, 해외시장 등 관련정보제공 지원 ⑤ 원스톱 수출지원시스템 마련 ⑥ 무역실무교육 개최
 ⑦ 통관절차 등 현지국 통관애로해소 지원 ⑧ 개별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⑨ 기타()

II. 인력실태 (2014. 12. 31일 현재)

- **현 인원** : 2014. 12.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내·외국인 불문, 현장일용직 제외)
 - ※ 현 인원 제외대상 : 현장일용직, 타 업체로부터 인력파견 및 용역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근로자
 - 다만, 파견 및 용역업체인 경우에는 외부에 파견한 근로자를 '현 인원'에 포함하여 기재
- **비정규직 범위**
 - ①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②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 ④ **가정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과 같이 사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로자
 - ⑤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 없이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부족인원** : 2014. 12. 31일 현재 당해 회사가 정상가동 또는 외부수요(주문)에 부응하기 위해 충원이 필요한 인원
- **채용계획인원** : 2015.1.1일부터 2015.12.31일 사이에 기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
- **직종구분**

사 무 · 관 리 직	인사, 기획, 경리, 비서 등 직접적으로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자(경영자, 임원 포함)
연 구 직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연구·개발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대졸이상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경험 보유자)
기 술 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가의 지휘 하에서 기술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 종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보유자)
기 능 직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장비조작/정비/설치 등 시공 과정에 종사하는 자 (전문계고 졸업 수준으로 전공과 일치하는 업무종사자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 보유자)
단 순 노 무 직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자
서 비 스 종 사 자	시공과 관련 없는 조리, 통근차량 운전 등에 종사하여 건설활동을 지원하는 자
판 매 (공 무) 직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견적, 입찰 등 공사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1. 직종별 인력현황 (현장일용직 제외)

구 분	현 인 원 (명)						부족인원 (명)	채용 계획인원 (명)			
	정규직(A)		비정규직(B)		합계(A+B)			정규직		비정규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① 사무·관리직											
② 연구직											
③ 기술직											
④ 기능직											
⑤ 단순노무직											
⑥ 서비스종사자											
⑦ 판매(공무)직											
⑧ 계											

※ 1인이 다수의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당해 인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분류

문2~문5의 합계는 문1의 현인원의 남녀 '합계(A+B)'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세요.

2. 재직연수별 인력현황 (현장일용직 제외)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현인원 (명)	남						
	여						
	합계						

3. 연령별 인력현황 (현장일용직 제외)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현인원 (명)	남							
	여							
	합계							

4. 학력별 인력현황 (현장일용직 제외)

구 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합계
현인원 (명)	남						
	여						
	합계						

5. 자격증 보유 인력현황 (현장일용직 제외)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문사무	해당없음	합계
현인원 (명)	남								
	여								
	합계								

※ 전문사무는 전자회계운용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자상거래관리사, 비서, 사회조사분석사 등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6. [문1에서 부족인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직종별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주요 이유는? (2개 선택)

직 종	응답란	보 기 ① 취업지원자가 없음 ② 지원자 중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 ③ 근무여건 열악(임금, 작업환경, 복지환경 등) ④ 해당 직종·업체의 장기발전가능성이 낮음 ⑤ 타사업체의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⑥ 회사 주변의 문화·복지시설 부족 등 ⑦ 구직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⑧ 출퇴근 불편
① 사 무 · 관 리 직		
② 연 구 직		
③ 기 술 직		
④ 기 능 직		
⑤ 단 순 노 무 직		
⑥ 서 비 스 종 사 자		
⑦ 판 매 (공 무) 직		

7. 귀사의 지난 1년간(2014.1.1~2014.12.31) 이직자/입직자 수는 직종별로 몇 명이었습니까?

직 종		① 사무·관리직	② 연구직	③ 기술직	④ 기능직	⑤ 단순노무직	⑥ 서비스종사자	⑦ 판매(공무)직	합계
이직자수 (명)	남자								
	여자								
입직자수 (명)	남자								
	여자								

* 이직자 : 지난 1년간 고용계약종료, 자발적 퇴직, 정년퇴직, 해고,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나간 근로자
 * 입직자 : 지난 1년간 신규채용, 경력채용, 복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으로 들어온 근로자

8. [문7에서 이직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직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대기업의 스카우트 ② 유사 중소기업의 스카우트 ③ 타 업종 근무 선호
- ④ 진학 ⑤ 당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 ⑥ 작업환경 불만족
- ⑦ 임금수준 불만족 ⑧ 개인사정 ⑨ 기타 ()

9. [문7에서 이직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① 임금 인상 ② 합숙훈련 및 단합대회 실시 ③ 다양한 연수·교육프로그램 제공
- ④ 대학진학 등 교육기회 지원 ⑤ 멘토링프로그램 시행 ⑥ 경력개발 경로제시
- ⑦ 사내 동호회 활성화 ⑧ 기타 ()

10. [문7에서 이직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타 기업체로의 기술인력 유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타 중소기업으로 유출(명) ② 대기업으로 유출(명) ③ 없음

11. 인력 채용시,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경력수준은 어떠합니까?

- ① 신규직원 ② 경력직(2년이상~5년미만) ③ 경력직(5년이상~10년미만) ④ 경력직(10년 이상)

12. 신규인력 채용시,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학력/학위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석·박사 이상)

13. 신규인력 채용시, 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① 열정 ② 전문지식 ③ 인성 ④ 학력
- ⑤ 관련분야 자격증 ⑥ 장기근속 가능여부 ⑦ 어학 ⑧ 기타 ()

14. 인력채용시 지급하는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력별	신규직	경력직		① 1,500만원 미만 ② 1,500~1,700만원 미만
고 졸			보 기	③ 1,700~2,000만원 미만 ④ 2,000~2,300만원 미만
전 문 대 졸				⑤ 2,300~2,500만원 미만 ⑥ 2,500~2,700만원 미만
대 학 졸				⑦ 2,700~3,000만원 미만 ⑧ 3,000만원 이상
대 학 원 졸				

15. 귀 사의 경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주요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장 사내교육(OJT) ②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③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 ④ 대학, 연구소 등 교육전문기관 위탁 ⑤ 모바일, 온라인 등 사이버교육 ⑥ 거래처 등에 파견
- ⑦ 실시하지 않음[☞ 문16으로 이동]

16. 만일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능한 외부 위탁교육기관의 부재 ②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③ 교육훈련 관련 정보부족
- ④ 경영진의 무관심 ⑤ 직원들의 무관심 ⑥ 예산부족
- ⑦ 업무공백 우려 ⑧ 업종 특성상 교육·훈련 불필요 ⑨ 기타 ()

17.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소기업 근로자 ② 대기업 근로자 ③ 청소년(초·중·고생)
- ④ 대학생 ⑤ 취업준비 청년층 ⑥ 학부모
- ⑦ 초·중·고 교사 ⑧ 언론인

1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공중파, 라디오 방송 등 언론매체 ②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 ③ 인식개선 교육
- ④ 교사양성 대학교(교대, 교원대, 사범대 등) 교과목 편성 ⑤ 기타()

19.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소기업 위상 및 경제기여도 ② 중소기업의 장점, 개선된 근무환경 등
- ③ 성공한 중소기업 CEO ④ 우수 중소기업 선정 ⑤ 기타 ()

20. 현재 청년층(고교·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수 현장연수기업의 사업참여 ② 전공과 연관된 연수업무 수행
- ③ 기업 담당자의 적절한 지도 ④ 참여 기업과 학생에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 ⑤ 기타 ()

21. 지난 1년간(2014년)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1-1. [문21의 '①있다'에 응답한 경우] 활용인원, 복무완료인원 및 복무 완료후 계속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활 용 인 원	복무완료인원	복무 완료후 계속근무인원
산 업 기 능 요 원	명	명	명
전 문 연 구 요 원	명	명	명

22. [문21-1의 '복무 완료후 계속근무인원이 없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유사 중소기업 이직 ② 타 업종 근무 선호 ③ 취업준비 ④ 작업환경 불만족
- ⑤ 임금 및 복지수준 불만족 ⑥ 학업 ⑦ 개인사정 ⑧ 기타()

23. 귀사가 최근 1년 동안 참여·활용한 정부의 인력지원시책 유형 중 도움이 된 시책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 모두 V표)

- ① 산업기능요원제도
- ② 외국인력제도(고용허가제)
- ③ 특성화고·대학생 교육 후 채용연계제도(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등)
- ④ 인건비 보조제도(청년인턴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고용유지지원금 등)
- ⑤ 재직자 직업훈련지원제도(중소기업연수원, 사업주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훈련지원 등)
- ⑥ 고용환경개선제도(출퇴근버스 및 기숙사 등 투자시설비 일부 지원)
- ⑦ 도움이 되지 않음(문24로 이동)
- ⑧ 활용한 적 없음(문25로 이동)

24. [문23에서 ⑦도움이 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금보다 정부지원금이 낮아 크게 도움이 안 됨
- ② 지원기간이 짧아 기간 만료 후 업체 부담 가중
- ③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에서 노력한 부분 보다 실제 지원이 낮아 혜택 없음
- ④ 기타 ()

4. 귀사의 사업전환 추진 경험으로 볼때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풍부한 자금동원 능력 ② 기술개발(R&D) 능력 ③ 미래시장선점 등 전략적 능력
- ④ 신규 아이템 ⑤ 정부지원시책 활용 ⑥ 제품화 및 공정혁신 능력
- ⑦ 기타 ()

5. 귀사가 사업전환을 추진한(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 포함)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새로운 성장활력 확보 필요 ② 주력업종의 수익성 저하
- ③ 주력업종의 성장성 저하 ④ 동종업종내 과당경쟁
- ⑤ 대체품 수입에 의한 경쟁력 약화 ⑥ 발주업체 및 협력업체 등의 요청
- ⑦ 기타 ()

6. 귀사는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하였습니까? (또는 조달할 계획입니까?)

- ① 자기자본 ② 직접금융(회사채, 유상증자 등) ③ 정부의 정책자금
- ④ 은행대출 ⑤ 제2금융권 대출 ⑥ 사채 및 기타

7. 귀사가 사업전환에 소요된(또는 투자예정인) 자금은 어느정도입니까?

- ① 5억원 미만 ②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③ 10억원이상 ~ 20억원미만
- ④ 2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⑤ 40억원 이상

8. 사업전환 추진시 주요 애로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새로운 거래선 확보 및 판로 미확보 ② 신규업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
- ③ 인력 확보 곤란 ④ 자금 조달 곤란
- ⑤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의 각종규제 ⑥ 자산취득, 매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 ⑦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 신인도 저하 ⑧ 주식교환 및 M&A 절차의 어려움
- ⑨ 기타 ()

9. 다음은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주요 정책들입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사업전환자금(시설, 운전) 융자지원 ② 사업전환컨설팅 지원
- ③ R&D(기술개발) 비용지원 ④ 사업전환가능성, 절차에 대한 진단컨설팅
- ⑤ 비수도권 기업의 사업전환시 법인세 감면지원 ⑥ 사업전환기업의 인력배치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 ⑦ 사업전환 업종분석 등 각종 정보의 제공 ⑧ 기타()

10. [문1의 ② 또는 ③에 응답한 경우] 사업전환을 통하여 귀사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기업만 응답)

- ① 매출액 ② 인력구조 ③ 부가가치액 ④ 1인당 생산성
- ⑤ 시장점유율 ⑥ 기술개발 능력 ⑦ 기타()

11. [문1의 ⑤에 응답한 경우] 앞으로도 사업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못느낌 ② 사업전환시 소요자금 충당이 어려움
- ③ 업종전환시 판로 개척에 어려움 ④ 신규 아이템의 기술개발에 어려움
- ⑤ 유망 업종의 정보 부족 ⑥ 경영진의 의지 부족 및 종업원의 반대
- ⑦ 기타 ()

IV.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사본 제출시 작성 생략 가능)

■ 귀사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은?

- ① 국제회계기준(K-IFRS)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중소기업회계기준 ④ 기 타

1.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

항 목	금 액 (천 원)	
	당 기 (2014.12.31일 현재)	전 기 (2013.12.31일 현재)
1) 유동자산 (=2+7)		
2) 당좌자산 (=3+4+5+6)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4) 단기투자자산		
5) 매출채권 (외상매출금+받을어음)		
6) 기타 (3,4,5 외 당좌자산 합계)		
7) 재고자산 (=8+9+10+11)		
8) 상품		
9) 제품 및 반제품		
10) 원재료		
11) 기타 (8,9,10 외 재고자산 합계)		
12) 비유동자산 (=13+16+23+27)		
13) 투자자산 (=14+15)		
14) 장기투자증권 (주식,회사채,출자금 등 합계)		
15) 기타 (14 외 투자자산 합계)		
16) 유형자산 (=17+18+19+20+21+22)		
17) 토지		
18) 건물·구축물		
19) 기계장치		
20) 선박·차량운반구		
21) 건설중인 자산		
22) 기타 (17~21 외 유형자산 합계)		
23) 무형자산 (=24+25+26)		
24)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실안,상표,의장권)		
25) 개발비		
26) 기타 (24,25 외 무형자산 합계)		
27) 기타비유동자산 (=28+29)		
28) 이연법인세자산		
29) 기타 (28 외 기타비유동자산 합계)		
30) 자산총계 (=1+12=47)		
31) 유동부채 (=32+33+34+35)		
32) 매입채무 (외상매입금+지급어음)		
33) 단기 차입금		
34) 유동성 장기부채		
35) 기타 (32,33,34 외 유동부채 합계)		

항 목	금 액 (천 원)	
	당 기 (2014.12.31일 현재)	전 기 (2013.12.31일 현재)
36) 비유동부채 (=37+38+39+40)		
37) 회사채		
38) 장기 차입금		
39) 부채성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40) 기타 (37,38,39 외 비유동부채 합계)		
41) 자본 (=42+43+44+45+46)		
42) 자본금		
43) 자본잉여금		
44) 자본조정		
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47) 부채 및 자본총계 (=31+36+41)		

2. 손익계산서

항 목	금 액 (천 원)	
	당 기 (2014.1.1.~2014.12.31)	전 기 (2013.1.1.~2013.12.31)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총손익 (=1-2)		
4) 판매비와 관리비 (=5+6+7+...+17+18+19)		
5) 급여 (각종 급여, 임금, 상여 등 합계)		
6)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7) 복리후생비 (경조비 등 포함)		
8) 임차료		
9) 접대비 (카드접대비 등 각종 접대비)		
10) 감가상각비		
11) 세금과 공과 (협회비, 회비 등 포함)		
12) 광고선전비 (판촉비 포함)		
13) 경상개발비·연구비		
14)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전입액 포함)		
15) 통신비		
16) 운반·하역·포장·보관비		
17) 보험료		
18) 무형자산상각비 (각종 무형자산상각액 합계)		
18-1) (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		
19) 기타 (5~18 외 판매관리비 합계)		
20) 영업손익 (=3-4)		
21) 영업외 수익 (=22+23+24)		
22) 이자수익		
23)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		
24) 기타 영업외 수익 (22,23 외 수익 합계)		

제49차(2015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기재요령 (응답업체용_건설업)

- 2014년 1년 동안의 실적을 기재 (단, 인력 및 사업전환은 2014년말 현재 기준)
-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합산하여 기업체(본사) 단위로 작성
- 금액은 모두 천원단위 (천원미만은 반올림, 마이너스는 수치 앞에 “-” 표시)
- 조사표 앞면 우측 상단의 지역, 산업분류, 규모, 번호는 기재사항 아님
- 조사표 뒷면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바람 (이 경우 조사표에 직접 기재 안 해도 됨)
- 조사표 뒷면 하단의 응답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I. 일반현황

- 대표자 : 성명과 성별, 연령을 기재 (성별은 V 표기)
- 주업종 : 보유등록업종 중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설립년도 : 법인은 법적 설립년도,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도 기재
 - ※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전환 년도,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년도 기재
- 기업유형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 모두 기재, 인증서가 없으면 일반기업
- 기업성장단계는 설립년도,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감안하여 기재
 - 진입기: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 성장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정체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경우
 - 쇠퇴기: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 가업승계완료기업은 현CEO 세대를 반드시 기재

II. 일반실태

1. 사업장

- 1) 사업장 수 및 면적
 - 현장사무소를 제외한 사업장의 개수와 면적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기재, 평 단위는 “1평 = 3.3058㎡”로 환산 기재

2. 수주현황

- 1) 2014년 1년 동안 낙찰 받은 공사의 입찰방식을 순위별로 기재
 - ① **일반경쟁** : 구매자가 공급자와 계약에 앞서 미리 일반인에게 구매계획을 널리 알려 모든 공급 희망자들로 하여금 계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②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 ③ **지명경쟁** : 지명된 몇몇 특정인들로 하여금 경쟁입찰하게 하는 방법
 - ④ **수의계약** :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

3. 건설투자

- 1) 연간 건설자재 구매액
 - 2014년 1년 동안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 구매금액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천원 단위로 기재
 - 도급업체로부터 건설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국내에서 1차 가공한 해외 자재를 구매한 경우 국내 구매액에 기재, 해외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 구매한 경우 해외 구매액에 기재
 - 2013년에 구입한 건설자재를 2014년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외
- 2) 연간 건설장비 구매(임대)액
 - 2014년 1년 동안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구매 또는 임대금액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천원 단위로 기재
 - 도급업체로부터 건설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외 건설장비를 국내 회사에서 구매(임대)한 경우 국내 건설장비 구매(임대)에 기재, 해외 건설장비를 직접 구매(임대)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 구매(임대)한 경우 해외 건설장비 구매(임대)에 기재

4. 공사실적

- 1) 연간 건설공사 매출액
 - 매출 총액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중 공사매출액만 기재 (**공사매출액 ≤ 매출액**)
 - 발주자 구분은 공사의 최초 원사업자 기준으로 기재

예시 : 서울시(원사업자)가 서울시청 시공을 A건설에게 발주하고, A건설이 일부를 B건설에게 위탁한 경우, B건설의 매출액은 “공공공사”로 분류

- 2) 공사대금의 평균 수취비율
 -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각각의 평균 비율 기재
 - 현금 수취비율은 순수 현금 수취비율과 어음대체용 현금 수취비율로 구분하여 기재

어음 대체용 현금 수취 : 어음을 대신하는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 등의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

- 3) 공사대금 수취시 현금과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
 - 공사대금을 수취하기까지의 평균 기일을 현금과 어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어음은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로 구분하여 기재
 - 현금 수취기일 : 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 현금을 받기 까지 평균 소요기일
 - 어음 수취기일 : 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 어음을 받은 날까지 평균 소요기일
 - 어음 결제기일 :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결제일)까지 평균 기일

예시 : 5월 1일 발주자에게 완공을 승인받고 5월 5일 현금으로 50% 결제받고, 나머지 50%는 5월 10일 3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 받은 경우, 현금 수취기일은 5일(5월1일~5월5일), 어음 수취기일은 10일(5월1일~5월10일), 어음 결제기일은 30일로 기재

5. 하도급 거래

- 1) 하도급 공사 매출액
 - 2014년 1년 동안 원도급자(원사업자에게 수주한 건설업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급 받아 수행한 공사 매출액을 기재 (**하도급 공사매출액 ≤ 매출액**)
 - ※ 재하도급인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수주 받은 하도급업체를 원도급자로 간주

6. 해외진출

- 1) 2014년 1년 동안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있거나 해외공사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
- 2) 1)번에 응답하지 않은 2014년 해외공사 수주실적이거나 해외공사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만 기재
- 3) 2014년 해외공사 수주실적이거나 해외공사 매출실적 유무에 상관없이 향후 3년 이내 신규 수출 및 해외투자 계획이 있는 해당지역을 기재
- 4) 3)에 응답한 해외공사 수주실적 또는 해외공사 매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만 기재

III. 인력실태

1. 직종별 인력현황

○직종구분은 반드시 학력, 자격에 의한 구분이 아닌 해당 기업체 내에서 어느 직무를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기재

2. 재직연수별 인력현황

○당해 기업체 종사자가 당해 기업체에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기재

5. 자격증 보유 인력현황

○당해 기업체 종사자가 자격증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한 자격증이 다수일 경우 최고 등급의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재

IV. 사업전환실태

○사업전환은 기존 사업부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종(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임

V. 재무제표

○법인기업은 3월말, 개인기업은 5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결산자료 중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3종에 대해 기재

○계정과목 중 주요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에 합산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조사표에 직접 기재하지 않아도 됨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당기(2014.12.31일 현재) 및 전기(2013.12.31일 현재) 모두 기재

계정과목	내 용
1) 유동자산 (=2+7)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2) 당좌자산 (=3+4+5+6)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의 취득 또는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4) 단기투자자산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대여금 등
5) 매출채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6) 기타	3), 4), 5)에 해당되지 않는 당좌자산으로 미수 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선급금, 선급법인세 등의 합계
7) 재고자산 (=8+9+10+11)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8) 상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타사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으로 판매목적용임
9) 제품 및 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자사에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작업폐품 등의 제품과 이미 상당한 가공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는 중간제품, 부분품의 반제품
10) 원재료	제조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으로 제조과정에 투입되지 아니한 것
11) 기타	8), 9), 10)에 해당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아직 판매, 저장 가능한 상태에 도달되지 아니한 재공품 및 저장품(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수선용 부분품) 등의 합계
12) 비유동자산 (=13+16+23+27)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을 말함
13) 투자자산 (=14+15)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을 포함함

14) 장기투자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회사채, 국·공채와 같은 유가증권 중에서 이자나 배당 또는 매매차익을 얻거나 경영권의 확보를 위하여 취득한 출자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등이 포함됨
15) 기타	14)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합계
16) 유형자산 (= 17+18+~+22)	채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17) 토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등기비용, 중개인수수료, 취·등록세가 포함되며,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로 구분
18) 건물·건축물	건물은 사무실 창고와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시설 및 건물부속설비이며, 건축물은 토지 위에 도로, 주차장, 울타리, 조명,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구조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
19) 기계장치	기계는 동력을 받아 외부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설비이며,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변질, 변형, 운동시키는 설비로서 일반기계, 운송설비(콘베이어, 기중기 등), 기타 부속설비 등이 포함됨
20) 선박·차량운반구	선박 및 기타의 수상 운반구와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21)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미완료되었거나 건설 목적으로 재료와 기계설비를 도입하고 지출하였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계정
22) 기타	17), 18), 19), 20), 21)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공구와 가구, 비품 등의 합계
23) 무형자산 (= 24+25+26)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파괴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
24) 산업재산권	각종의 산업기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자산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됨
25) 개발비	기술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
26) 기타	24), 25)에 해당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 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의 합계
27) 기타비유동자산 (= 28+29)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28) 이연법인세 자산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의 법인세에 관련된 자산
29) 기타	28)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의 합계

30) 자산총계 (=1+12=47)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합계
31) 유동부채 (= 32+33+34+35)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32) 매입채무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33) 단기 차입금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외의 자금조달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대차계약에 의해 현금을 차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채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34)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또는 기타 장기차입금 등 고정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
35) 기타	32), 33) 34)에 해당되지 않는 유동부채로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상환되는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선수수익 등의 합계
36) 비유동부채 (= 37+38+39+40)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
37) 사채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장기인 채무증서로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양정서에 나타나 있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함
38) 장기 차입금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
39) 부채성 충당금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금, 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이 해당
40) 기타	37), 38), 39)에 해당되지 않는 비유동부채의 합계
41) 자본 (= 42+43+44+45+46)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자본으로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 함
42) 자본금	기업에 영구히 남아서 기업활동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출자금을 의미하며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성
43) 자본 잉여금	증자나 감자, 주주와의 기타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등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만 해당
44) 자본조정	당해 항목이 주주와의 거래이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성격인 것과 자본의 차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가 어려운 항목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잔설이자, 자기주식 등이 해당
4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회계기간 동안 제3자(주주제외)와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포괄손익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등이 해당
46) 이익잉여금(결손금)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배당금 등을 통해 주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시키지 않고 기업내부에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하여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
47) 부채 및 자본총계 (= 31+36+41)	

2) 순익계산서 : 당기(2014.1.1.~2014.12.31.)와 전기(2013.1.1.~2013.12.31.) 모두 기재

○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숫자 앞에 마이너스(-) 표시

계정과목	내 용
1)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
2) 매출원가	매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사 또는 구입과정에서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총소비 금액
3) 매출총손익 (=1-2)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잔액으로 매출원가가 매출액 초과시 그 차액을 매출총손실로 표시
4) 판매비와 관리비 (= 5+6+~+19)	제(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됨
5) 급여	판매와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임금 및 상여와 3개월 이하의 임시근로자 및 일시 고용하는 인부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잡급 및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제급여, 임원상여를 포함
6) 퇴직급여	판매와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 매회 계년도마다 일정금액을 비용화하거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판매와 관리부분 근로자 등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
7) 복리후생비	판매와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법정 복리시설의 사업주 부담액과 종사자의 위생·보험·오락 등 제후생비와 현물급여를 포함
8) 임차료	판매와 관리부분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9) 접대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10) 감가상각비	판매와 관리부분에서 사용된 고정자산(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의 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처분방법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한 임시 거액의 감가상각비는 특별손실로 계상
11) 세금과 공과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며, 공과금은 협회나 조합회비, 조합 각출금 등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12) 광고선전비	통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상 지출된 광고 및 홍보 관련 금액
13) 경상공발연구비	특정 신기술연구나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과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후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기업의 의도 및 능력 미래의 경제적 효익상출 등의 요건을 하더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으로 처리
14) 대손상각비	회계기간 말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추정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15) 통신비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기, 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전화 및 팩스료, 핸드폰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이 포함
16) 운반·하역·포장·보관비	제(상)품의 운반, 하역, 포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제품을 창고시설에 보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17) 보험료	판매와 관리부분에 사용되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그 밖의 손해보험료
18) 무형자산 상각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개발비, 영업권, 광업권 등의 각종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용
18-1) (개발비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중 개발비 상각액
19) 기타	5)~18)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로 소모품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판매수수료 등이 해당
20) 영업손익 (=3-4)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순익으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순익
21) 영업외수익 (=22+23+24)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등이 해당
22) 이자수익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수익으로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업의 유증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어음 만기일까지 이자를 어음금액으로부터 공제한 할인료 수입, 유가증권인장·단기투자자산에 대한 이자 등이 포함
23)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	외환차익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익이며 외환환산이익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산손익
24) 기타	22), 23)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외 수익으로 수입 배당금,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잡이익 등이 해당
25) 영업외비용 (=26+27+28)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금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기부금 등이 해당
26) 이자비용	금전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차입금이나 외사채발행으로 조달한 타인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자금조달을 위해 보유어음을 할인할 경우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등이 포함
27)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실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며 외환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
28) 기타	26), 27)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외 비용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부금, 잡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이 해당
29) 법인세(소득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20+21-25)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익으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순익을 말하며, 영업손익과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금액
30) 계속사업손익법인세(소득세)비용	법인세(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서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소득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 등을 가감한 금액
31) 계속사업손익 (=29-30)	법인세(소득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에서 계속사업손익법인세(소득세)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말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나타냄
32) 중단사업손익	회계기간 중 사업을 중단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중단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는 중단사업부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익의 금액을 나타냄
33) 당기순손익 (=31+32)	계속사업손익에서 중단사업손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냄

3) 공사원가명세서 : 2014. 1. 1. ~ 2014. 12. 31

계정과목	내 용
1) 당기 총 공사비용 (=2+3+4)	당기 중 건설공사에 투입된 총 비용으로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2) 재료비	건설공사에 직접 소비된 주요 재료비용(직접재료비)과 직접 소비되지 않은 보조재료비, 소모품비 등 간접재료비용이 이에 속함
2-1) 당기((2014년) 구매액	재료비 총액 중 2014년 구매액을 별도 기재
3) 노무비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제수당, 잡급급여, 퇴직급여를 포함
4) 현장경비 (= 5+6+~+14+15)	건설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원가요소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하고 당기의 건설공사에 투입한 일체 비용
5) 전력비, 가스수도비	건설공사에 소비된 전력비, 수도료, 연료비 및 유류비 등의 비용
6) 운반·하역·포장·보관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의 운반, 하역, 포장 및 보관에 발생하는 비용
7) 감가상각비	현장사무소,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및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8) 수선비	현장사무소, 기계장치, 공구·기구 등의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9) 외주가공비	건설공사를 외부에 의뢰할 경우 수탁업체에 지불한 비용
10) 소모품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소모공구기와 소모품 등의 비용
11) 세금과 공과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12) 임차료	시공하는데 필요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차한 경우 지급되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
13) 복리후생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노무비 이외에 지급되는 회사부담 및 사업주부담의 보험료와 식당, 매점, 사택, 기숙사 등의 복리후생시설 운영비, 식대, 작업복 구입 등의 비용
14) 경성개발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개발비 중 공사와 관련된 비용
15) 기타	5)~14)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로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해당
16) 기초 미성공사	전기로부터 이월된 미성공사(미완성주택)에 대한 총 지출액
17) 기말 미성공사	당해연도 공사원가에 투입이 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결산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공사 및 주택으로 재고자산의 미완성주택 및 미완성공사
18) 타계정 대체액	자사의 건물이나 택지조성 등을 자체공사하는 경우 동지출된 부분은 당기공사에서 공제하여 유형자산 등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금액
19) 당기 공사 원가 (= 1+16-17-18)	당기 중 건설공사를 위하여 소요된 총 비용으로 당기 총 공사액에 기초 미성공사를 가산하고 기말 미성공사와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하여 산출